

배트 공인 규정

배트 공인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트 (목재, 비목재)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배트 공인 규정이라 칭한다.(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적용 및 의무)

1. 본 규정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및 비목재 배트에 대해서 적용한다.
2. 본 협회에 야구로 등록된 고교· 대학 및 실업팀 선수는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된 목재배트만을 사용해야 하고 야구 초등· 중학 선수 및 생활체육 동호인, 소프트볼 선수 및 동호인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전국대회에 반드시 본 규정에서 승인된 비목재 배트만을 사용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해당 팀이나 선수에 대하여 징계한다.

제2장 공 인

제4조(공인의 신청)

1. 신청조건 : 배트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공인을 신청할 경우 제6조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신청절차 : 사업자가 공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나. 전년도 납세 증명원
- 다. 국내 공장 등록증 사본
- 라. 제품별 품격 현황 및 견본 각 2본
- 마. 본 협회 납품 가격표
- 바. 배트의 제조 공정의 상세한 현황
- 사. 사업자가 외국 회사의 배트를 위탁 제조하는 경우는 위탁 회사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여야 한다.
- 아. 외국산 배트에 대한 공인을 신청하는 국내 수입 판매자는 국내 독점 판매권을 증명할 수 있는 본사와의 계약서(한국 총판권)를 제출해야 한다. 단, 국제야구소프트볼연맹(WBSC)에서 공인된 제품에 한한다.

제5조(공인의 승인) 사업자가 공인을 요청하였을 경우 사무처가 승인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공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승인은 공인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제조의 기준)

-목재-

1. 표면의 마무리 : 방습(防濕)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포가공(塗布加工)은 허용되나 반발력에 영향을 미치는 수지(樹脂)나 기타 일질의 경화제 및 강화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표면의 도포 재료는 자연색과 담황색, 다갈색, 검정색에 한하여 나이트(木地)가 드러나야 한다.
3. 배트의 표면에는 배트의 모델, 배트의 품명, 품번, 제종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표시는 배트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 이하, 가로 12cm 이하이어야 하고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2cm 이하 가로 2cm 이하이어야 한다.
4. 또한 상표 또는 기타 문자 등을 배트의 손잡이 부분 끝에서 45.7cm 까지에는 표시할 수 없으나, 링은 1개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폭은 3.5cm 이하로 한다.
5. 상기 1,2,3,4항의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야구 규칙(1.10)과 본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야구규칙 1.10 주요내용

- 굵기 : 7cm(2 $\frac{3}{4}$ 인치) 이하 ○ 길이 : 106.7cm(42인치) 이하
- 접합 방망이 부분적 허용(국내에서는 사용 불가)
- 커프트 배트(선단을 도려낸 방망이)는 깊이 2.5cm 이하, 지름 2.5cm 이상 5.1cm 이하로 움푹 파인 단면이 둥글어야 하고 소재를 도려낸 것으로 그쳐야 한다.

-비목재-

1. 배트 33인치 기준 배트의 스위트 스팟(Sweet spot) 지점이라 할 수 있는 152mm에 1.21mm의 압축 후 하중 측정한 값이 아래 기준표 이상으로 제조되어야 한다.

	알루미늄	복합재(카본)
초등학교	2,600N	2,990N
중학교	3,400N	4,100N
생활체육	3,350N	4,000N

2. 배트에 표시되어있는 사양이 아래와 같은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제조되어야 한다.

- 길이 : $\pm 2\text{mm}$
- 무게 : $-0.5 \text{ OZ} \sim +1.0 \text{ OZ}$
- 배럴지름 : $+1\text{mm}$

3. 상기 1,2항의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야구 규칙(1.10)과 본 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야구규칙 1.10 주요내용

- 굵기 : 7cm(2 $\frac{3}{4}$ 인치) 이하 ○ 길이 : 106.7cm(42인치) 이하

※ 소프트볼 배트의 경우 국제연맹(WBSC 또는 ISF)에서 인증한 배트에 한해 사용. (2020년부터 시행/ 2017년 감독자회의 요청사항)

제7조(공인의 효력 및 의무)

- 목재 -

1. 사업자는 매년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협회로부터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기일 내에 본 협회가 정하는 공인료를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공인을 통보 받은 사업자는 시합용 배트에 대하여 제9조의 공인 인(印)을 받아야 하며 공인 인(印)을 받은 배트는 협회와 협의된 판매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배트의 공급 수량 부족 또는 불량 배트 등의 사유로 구입자로부터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개인적 사유로 생산량을 조절해야 할 사유가 발생될 경우 즉시 협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 공정 및 야구 배트에 대한 수시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공인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국제대회에서의 사용을 위해 국제야구소프트볼연맹(WBSC)에 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 비목재 -

1. 사업자는 공인받고자 하는 모델별로 1회 공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작업체 또는 수입총판업체만 가능)
-한번 공인 받은 배트는 3년간 공인효력, 3년 이후 재공인 미 신청 시 사용 금지
2. 사업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용품시험소 테스트를 통과한 배트 리스트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테스트 비용 사업자 부담)
3.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후 협회가 제공한 공인인증 마크를 부착한다.
4.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업자는 본 협회의 제조 공정 및 배트에 대한 수시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취소)

1. 본 협회는 상기 제4조에 의해 신청한 배트가 제6조의 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2. 공인을 취소당한 사업자는 공인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사업자가 배트의 제조를 중지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공인을 승인 받았을 경우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공인 마크 표시)

1. 협회는 공인사에서 제조한 배트 중 경기용 배트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협회를 상징하는 별도의 마크를 부착한다.
2. 공인 마크는 제6조 4항에서 언급된 부분을 피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본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공인 마크가 없는 배트를 협회 주최대회에서 사용하였을 경우 본 협회는 해당 팀이나 선수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경기 진행(승패결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경기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인의 효력 기간)

1. 공인의 효력 기간은 본 협회의 공인 승인 통보를 받은 당해 연도로 한다. (비목재 배트는 3년)
2. 협회의 마크가 표시된 시합용 배트에 대하여는 공인이 취소된 회사의 제품일지라도 제10조 제1항의 기간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단, 배트의 문제로 인하여 취소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3. 취소된 공인사는 취소된 시점부터 3년간 본 협회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시행시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제정 : 2004년 12월 9일 제3차 이사회
- 개정 : 2017년 11월 28일 제3차 이사회